

의안번호	제153호
의결 연월일	2007년 월 일 (제264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7년 10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 조정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을 이전기관에 따라 국가기관과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명시(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및 범위 변경(안 제40조)
 - 좁고 긴 모양의 토지에 폐하천 추가(제2호)
 - 폐도·폐구거·폐제방 → 폐도·폐구거·폐제방·폐하천
 - 사유건물이 위치한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제1호·제4호)
 - 일단의 소규모 토지 범위 조정
 - 시 지역 1,000㎡이하, 기타지역 2,000㎡이하인 토지로 일치
 - 도 소유외의 건물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호)
 - 도 소유외의 건물 → 도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

- 수의매각 가능 최대면적의 조정
 -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되 그 2배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 300㎡ 이하, 일반시의 동지역 500㎡ 이하, 광역시·군의 읍·면지역 1,000㎡ 이하
 -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단독주택일 경우 200㎡ 이하)
- 공유토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면적 명시(제5호)
 - 제1호(삭제) →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 300㎡(시의 동지역 지역 500㎡, 광역시·군의 읍·면지역 1,000㎡) 이하

○ 분수립의 설정을 삭제(안 제44조)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한도액으로 변경(안 제64조)

- 총 보상금 : 1,000만원 → 3,000만원

- 필지별 보상금

- 관인도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 : 200만원 → 600만원
- 기타재산 : 100만원→300만원

의안전문 : 따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 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본문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중 “폐도·폐구거·폐제방”을 “폐도·폐구거·폐제방·폐하천”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도 소유외의 건물”을 “도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하며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호의 “제1호의”를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제1호 본문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본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 < 삭 제 >		
제32조(대부료의 감면) 1. ~ 3. 내용 생략 < 신 설 >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1. ~ 3. 내용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영 27조 제8항의.....		제39조 (조성원가 매각)영42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1. < 삭 제 >		
2. 폐도·폐구거·폐제방..... 3. <내용 생략>		2. 폐도·폐구거·폐제방·폐하천..... 3. <내용 생략>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제42조(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06.12.30>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마. 매각기준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③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는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④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폐구거·폐하천·폐제방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한한다.